

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국문논문집 심사지침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국문논문집에 투고된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심사위원)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이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 단,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3조(심사내용)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, 타당성, 완성도,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.

1) 독창성 :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,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.

- ① 주제, 내용, 방법이 독창적인 것.
- ② 학계,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.
-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.
- ④ 창의성이 큰 계획, 설계,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, 경험이 제시되는 것.
- ⑤ 시의 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,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.

2) 타당성 :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,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.

-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.
-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.
-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.

3) 완성도 : 원고가 규정에 따라 정확,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.

- ① 전체 구성의 적절성
-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
- ③ 기존의 연구, 기술과의 관련성
- ④ 문자표현의 적절성
-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

4) 활용성 :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,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.

-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가.
- ② 연구, 기술성과의 응용성, 유용성, 발전성이 있는가.
- ③ 연구, 기술 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.
- ④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.

제4조(심사판정)

1) 원고대로 게재가 :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해도 되는 경우

2) 수정 후 게재가

(자구) 원고에 오자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는 경우

(내용)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) 수정 후 재심요 :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4) 기술기사로 재투고 권유: 원고가 기술기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) 게재불가: ①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 다른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논문

제5조(심사기한)

- 1)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심사자가 별 통보 없이 심사기한에서 2주를 경과할 경우 위원을 자동 교체한다.)
- 2) 수정 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 의뢰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. 단, 심사자의 연기통보가 있을 시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.

제6조(심사결과의 처리)

- 1) 게재: 다음에 해당되는 논문은 논문집에 게재한다.
 - ① 1차심사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
 - ② 1차심사와 2차심사를 포함하여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지만, 편집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- 2) 게재불가: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
 - ① 1차심사 및 2차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
 - ② 1차심사와 2차심사를 포함하여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, 편집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- 3) 반려: 학회에서 추구하는 바와 다른 분야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.

제7조(이의제기)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.

제8조(기타)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문논문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.